2013년도 대전충남지사
종합감사 결과

❑ 감사기간 : 2013. 4. 22. ~ 4. 26. (5일간)

❑ 감사인원 : 4명

❑ 지적사항 : 5건

○ 주의 1, 시정 2, 현지조치 1, 통보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관리번호 : 1

구분	지적 사항
주의	**제 목 : 부동산담보 취득 부적정** 내 용 : 자금융자규정에 따르면 공장은 공장설비 일체를 공장재단으로 조성한 것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거 저당대상목록이 명시된 것을 부동산 담보물건으로 취득토록 정하고 있음 (주)◧◧◧◧◧ 부동산담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기계기구를 제외한 토지 및 건물에 한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일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취득함 ⇒ 기계기구를 포함하여 감정평가를 재실시 하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조치토록 『시정』요구

관리번호 : 2

구분	지적 사항
통보	**제목 : 부동산담보 대출한도 산정 부적정** 내 용 : 자금융자업무지침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한도 산정시 이동성 기계기구는 감정평가액에서 공제하여 인정감정가를 산정한 후 담보비율을 적용토록 정하고 있음 ☆☆☆☆☆☆☆☆☆☆ 공장에 대한 대출한도 산정시 핸드카 등 총 7종의 이동식 기계기구의 감정가액 9,933천원을 공제하지 않은 채 대출한도를 산정하여 386,000천원을 대출하였으나 이동식 기계기구를 제외할 경우 대출한도는 382,021천원으로 적정 대출한도액에 비해 3,979천원이 초과 대출함. ⇒ 부동산 담보한도 산정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처분하고, 대출한도를 초과한 융자금을 상환하거나 추가 담보 취득토록 『시정』 요구

관리번호 : 3

구분	지적 사항
통보	**제 목 : 수출선도조직 기반조성인센티브 지원시설물 사후관리 불철저** 내 용 : 수출선도조직이 기반조성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취득한 1천만원 이상 집행된 고정자산의 경우 사후관리 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선도조직 사업자는 해당 지정양식의 장부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작성하는 한 편, 연 1회 소관지사에 보고토록 정하고 있고, 해당 지사에서는 5년 간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에서 지게차 및 화물차(47백만원), (주)◘◘◘에서 알밤 선별/세척기(30백만원)를 구입하는 등 12종 665백만원의 관리대상 주요자산 취득 사실이 있으나, 해당 선도조직으로부터 관리 장부를 제출받거나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선도조직 인센티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 처분

관리번호 : 4

구분	지적 사항
통보	**제목 : 국외출장비 지급 오류** 내 용 : 여비규정 제25조(지급기준)에 따르면 “숙박비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2년 5월『대만 홍보·판촉행사』와 2012년 6월『홍콩 홍보·판촉행사』점검 출장을 시행하면서 숙박비를 실제 숙박 일수보다 초과하여 지급함. ⇒ 감사기간중 과오지급된 국외출장비를 현지에서 환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지 지도 실시 등「현지조치」완료